

4.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施行規則

建設部令 第476號 1991年 1月 25日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기초조사의 실시) 건설부장관, 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.

1. 공장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
2. 공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
3. 공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공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

제 3 조(공업단지지정대상등)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지정권자(이하 “공업단지지정권자”라 한다)는

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공업단지의 지정과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업단지지정대장
2.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대장
3.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

제 4 조(지방공업단지등 지정승인신청서) 영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

제 5 조(공업단지지정신청서) 영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공업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.

제 6 조(간이공작물) 영 제14조제4항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”이라

함은 임시로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공작물을 말한다.

1. 비닐하우스
2. 잠실
3. 고추·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
4. 담배건조실
5. 버섯재배사
6. 종묘배양장
7.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.

제 7 조(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) ①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.

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(개발사업대행신청서)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.

제 9 조(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) ①영 제21조제1항·영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·지방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

제9호서식에 의한다.

②영 제21조제3항·영 제22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.

제10조(위탁요율기준)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요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행령 별표를 준용한다.

제11조(부담금납부통지서) 영 제31조제4항·영 제32조제1항·영 제33조제1항 또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·손괴자부담금·이용자부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.

제12조(준공인가신청서등)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.

②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.

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2항 및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

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)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.

제14조(개발토지·시설등의 분양계획서)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·시설 등의 분양에 관한 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.

제15조(분양가격의 승인신청) ①사업시행자는 영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분양가격승인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서류
2.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이윤의 산정에 관한 서류
3.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사본

제16조(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등)

①사업시행자는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의

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시설등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임대요율) 영 제42조제1호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”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내용의 광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(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말하며, 영 제42조제2호에서 “건설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”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을 말한다.

제18조(토지·시설등의 관리업무위탁) 사업시행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토지·시설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,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9조(업무위탁 신청) 영 제43조제1항

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.

부 칙

제20조(증표)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.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법령) 산업기지가발촉진법시행규칙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[별 표]

공업단지개발사업위탁요율기준(제10조제1항관련)

공사비(원)	요 율	비 고
100억 이하	9.0% 이내	1.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·노무비·경비·일반관리비·이윤·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2.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·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100억 초과 300억 이하	8.0% 이내	3.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.
300억 초과 500억 이하	7.5% 이내	4.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. 5.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료를 가산한다.
500억 초과	7.0% 이내	6. 조사·설계등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기준에 의한 공사비로 본다.

◀ 제정이유 ▶

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(1990. 1. 13, 법률 제4216호) 및 동법시행령(1991. 1. 14, 대통령령 제13250호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◀ 주요골자 ▶

- 가. 사업시행자가 도로·항만·철도 등 공공시설의 건설사업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위탁요율기준을 정함(제10조 제1항 및 별표).
- 나.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위탁하는 경위의 위탁요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(제10조제2항).
- 다.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임대하는 토지·시설등의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, 임차인이 임대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도록 함(제16조제2항).
- 라.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임대하는 토지·시설등의 임대요율을 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로 정함(제17조).
- 마. 공업단지의 지정신청서등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함. (건설부 제공)